**콘텐츠 영업제휴 계약서**

[ ](이하 "갑"이라 칭함)과 [ ](이하 "을"이라고 칭함)은 “을”의 영업망 또는 영업대행망을 통해 “갑”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공급하기 위해 상호 제휴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대한민국 내에 공급하는 컨텐츠 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 및 라이센스)**

1. "갑"이 제공하는 "제품"은 "갑"이 저작권 또는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이며, 본 계약상 제공되는 "제품"의 리스트는 [첨부1]과 같다.

2. 동조 1항 외의 신규/추가적인 “제품”에 대한 영업은 상호 사전 협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영업의 진행)**

1. "갑"은 "을"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갑"의 제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타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갑"과 "을"은 영업 진행 현황을 수시로 공유하여 중복 영업을 피해야 한다.

3. 그 외 사항은 상호 협조하여 진행한다.

**제4조(판매 권한 및 의무)**

1. "을"은 대한민국 내의 자신의 영업망 또는 영업대행망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을”은 판매처와 관련한 계약자 및 계약 정보를 “갑”과 공유한다.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갑”의 명의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4. "을"은 "제품" 공급에 따른 대금의 수금 및 결제를 진행하며, "갑"의 명예와 사회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유통구조 유지 및 가격 안정(덤핑 방지)을 위해 노력하고, 유치한 고객의 지속적인 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5.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등 일체의 사유로 "갑"과 "을"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을"은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공급된 판매처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5조(지식 재산권 등)**

1. "갑"은 "제품" 에 대한 저작권 또는 유통권(“지식 재산권 등”)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갑”이 알고 있는 한 해당 콘텐츠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일체의 불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을"이 제3자로부터 전항의 “갑”의 보증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청구 받은 경우 "갑"은 이로부터 "을"을 면책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을”은 관련 정보를 “갑”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지식재산권 등이 제3자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품”의 지식재산권 등이 침해받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수익배분 및 정산)**

1. "을"은 "갑"에게 별도로 합의한 제품 공급가를 지급한다.

2. "을"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매월 말에 그 달에 발생한 매출을 정산하여, "을"은 "갑"에게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을"은 "갑"에게 "갑"의 제품에 대한 영업진행 및 매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제7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본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상호간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상호간에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9조(계약의 해지)**

이 계약은 다음 사항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요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1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2.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갑’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때

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고도 2주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갑"이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타 업체와 동일한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

1. "을"은 "갑"이 제공한 제품에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갑’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이 있다. 다만, 이 경우 “갑”의 배상책임은 “을”이 최종 공급처에 지급한 배상액 또는 액수를 증빙할 수 있는 직접 손해액을 한도로 한다.

2. “을”이 본 계약에 기한 영업활동 중 제4조 제3항 및 제4조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갑”이 제3자로부 터 소송을 당하거나 평판이 하락함으로써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에는 “갑”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포함된다.

3. "갑"의 “제품”이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갑"에게 통보된 바 없이 판매되었을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을”의 배상책임은 “갑”이 입은 손해액수를 증빙할 수 있는 직접 손해액을 한도로 한다.

**제11조(분쟁해결)**

1.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가지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통념과 관행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2.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00월 00일

“갑”

주 소 :

회 사 명

대 표 자 : (인)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